



#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안내

**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!**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.

## 1.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추진경위

- '93. 6. 11 : 축산법을 제정하여 등급판정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(축산법 제56조)
- '99. 9. 7 :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등급판정수수료는 농림부장관이 고시하여 2001. 1. 1부터 시행
- '00.12. 29 : 2000년 구제역 발생과 2001년 소 및 쇠고기 수입자유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년간 유예조치
- '02.8~9월 : 수수료에 대한 중앙 및 지역단위 설명회 개최
- '02.12. 10 : 수수료 고시(안)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
- '03. 1. 6 : 소, 돼지 등급판정수수료 농림부에서 고시(계란은 품급판정소에서 공고)

## 2. 축산물등급판정 현황 및 수수료 납부사유

- '89년부터 도입한 축산물등급판정은 과거 13년간 축산물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안정적 사업추진과 등급판정 대상축종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에서와 같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소요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축산물등급판정 성과
  - 소도체 등급판정 실적(2002년) : 630천두(소도체 1등급이상 출현두수 160천두)
  - 한우고기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 16.8%포인트 증가
    - ('97) 18.4% → ('00) 24.8 → ('01) 29.9 → ('02) 35.2
  - 돼지도체 등급판정 실적(2002년) : 14,982천두(A·B등급 출현두수 10,259천두)
  - 돼지고기의 A·B등급이상 출현율 23.8%포인트 증가
    - ('97) 44.7% → ('00) 64.0 → ('01) 67.3 → ('02) 68.5
  -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등급판정의 효과로 한우는 두당 144천원(총 790억원), 돼지는 두당 12천원(총 1,600억원)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
- 축산물등급판정은 우리나라보다 30년이상 먼저 시행한 미국('27), 일본('63), 캐나다('29), 독일('72) 등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.

## 3. 수수료 납부시기 및 금액

-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2003년 1월 6일부터 납부합니다.

〈수수료〉

소	돼 지	계 란
1,600원/두	300원/두	0.5원/개

○ 계란은 1일 10만개 이상시 0.5원(10만개 미만은 1일 5만원)

#### 4. 등급판정수수료 납부 방법

- 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축장(계란집하장) 경영자에게 「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」 제출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- ② 도축장(계란집하장) 경영자가 현행처럼 해당 축산물등급판정사에게 「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」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사는 판정을 실시합니다.
- ③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수수료 금액을 모아서 해당 도축장(계란집하장) 경영자에게 고지하며, 도축장(계란집하장) 경영자는 매월 20일까지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합니다.

#### 5.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어디에 사용하는가?

■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축산물등급판정 업무에 필요한 경비(인건비, 운영비 등)로 사용됩니다.

(축산법 제41조)

- 이를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소요경비를 최소화하고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,
- 등급판정한 결과를 농가에 환류(Feed Back)시켜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물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강화합니다.

#### 6. 수수료 징수 관련근거 법령

■ 축산법 제41조(수수료)

-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(축산법 제41조2항)
-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여야 한다.(축산법 제41조3항)

■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(등급판정수수료 징수절차)

-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등급판정 신청시 도축장경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수수료납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날 10일까지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④ 도축장경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수수료를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매월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